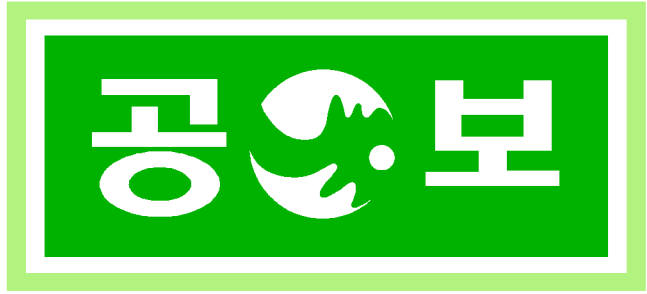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 제 901 호 2014. 8. 11(월)

###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6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 2

###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7호[도로명주소 고시] ..... 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8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 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li> </ul> </li> </ul>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심사
- 2. 심사결과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③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특정 위원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과 통제를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1. 울산광역시 협의 결과
- 2. 타당성 검토 결과
- 3.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제공한다.

제6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 타당성 검토기관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타당성 검토기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한다.
- ③ 심사는 별도의 심사표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④ 심의위원은 비공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내용은 설립추진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설립등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설립심 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임무(제2조)
  -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심사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은 7~9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이상 위촉
  -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준(제5조)
  - 울산광역시 협의결과,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27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고현로 184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지구 528 6-1L	울산광역시 북구 고원로 184	2014-08-11	고원백상진의공을기리기명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18 5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10	2014-08-11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2013-12-30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준지구 528 6L	울산광역시 북구 고원로 186	2014-08-11	고원백상진의공을기리기명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4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53-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96	2014-08-11	주민투구나알수있는지명을사용하였으며,천곡동간체지역의분류에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8-03-11	
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8-11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 7	2014-08-11	효문동문어마을에있었던효문동지송도로명인하여효문동지이름으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지반정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28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1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4. 8.7.	2014 - 2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09번길 518-46	김현수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15번지 지선	70	2014.8.7. ~ 2014.8.17.	신명동 해변정화활동 및 기타봉사활동 휴식공간 설치	조건부 허 가